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속담에 대하여

조 남 호*

1. 서론

국어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를 할 때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항상 연구자를 괴롭히는 문제이다. 특히 속담을 대상으로 할 때 자료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전하는, 상당수의 한글로 표기된 역사적 문헌이 번역 문헌이어서 속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한글로 창작된 문학 작품에서야 드물게나마 속담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속담의 경우는 漢譯된 속담들이 전한다. 『三國遺事』에서 이미 속담이 확인되며 조선 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속담을 따로 수집하여 정리한 문헌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洪萬宗의 『旬五志』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이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漢譯 속담과 풀이만 제시되어 있다. 이들 漢譯 속담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方鍾鉉·金思燁(1949)¹⁾에 부록으로 실리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전하는 속담이라면 한역이 되었다 해도 兩者를 연결짓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예를 들어 ‘官豬腹痛’이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데 ‘관돌 배 앓기’를 漢譯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속담이 두 단어 이상으로

*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이 책은 1940년에 朝光社에서 처음 출간된 『俗談大辭典』과 동일한 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1949년에 敎文社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가 1940년에 출간된 책을 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1949년으로 밝혔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책으로 1958년에 文星閣에서 간행한 方鍾鉉, 金思燁 공저 『俗談辭典』이 있는데 속담의 내용은 동일하며 부록은 삭제되었다.

구성되어 있어 漢譯을 해도 흔적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속담에는 비유적인 뜻이 있는데 뜻까지 같다면 兩者는 더욱 확실하게 연결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李基文(1980)에 수록된 속담이 7,200개 가량인데 가장 많은 속담을 수록했다고 하는 『東言解』가 불과 425개의 속담을 수록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하는 漢籍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속담 수집의 범위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는 속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헌을 얻은 바 있다.

한역 속담의 수집이라는 점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朝鮮王朝實錄』이다. 필자는 번역된 『宣祖實錄』과 『肅宗實錄』을 읽으면서 드물지만 속담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록에서 다양한 사건, 대화, 글월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당대에 사용되었던 속담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실록 원문이 한문이기 때문에 당대에 속담을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속담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다른 문헌에 전하는 속담이나 다를 바가 없다.

두 임금의 실록에서 찾은 속담이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실록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그런 대로 적지않은 속담을 수집할 수 있을 듯하였다. 중요한 문제점은 실록 전체를 읽으면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속담을 수집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자료의 양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1995년에 서울시스템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조선왕조실록 시디를 주목하였다. 번역이기는 하지만 실록 전체가 수록되어 있고 검색 기능도 있어 자료 검색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속담을 수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검색의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속담을 수집할 수는 없다 해도 상당수의 속담은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검색 결과 적다고 할 수는 없는 數의 속담을 수집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처럼 조선왕조실록 시디를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실록에 나타나는 속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본고는 시디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위해서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검색용 주제어가 잘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실록 시디는 이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실록 편찬자가 속담을 인용할 때 속담임을 알 수 있는 한자를 사용하고 번역자는 이 한자를 예컨대 ‘속담’이라는 말로 항상 번역을 하였다면 우리는 거의 정확하게 속담에 대한 자료를 남김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에 불과하다.

우선 실록 편찬자가 속담을 인용하면서 속담임을 알리는 정보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있다.

- (1) 우리 나라 일은 이른바 관가 돼지가 배 앓는다는 격이다. 모든 기계가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이는 바로 유사(有司)의 일이다.(我國之事 所謂官豬腹痛 凡器械不精 何以用之 此乃有司之事)<선조 30년 1월 16일(정미)>
- (2) 장인(匠人)을 두고 기계를 설치하고서 헛되이 늪료(廩料)만 소비하고 무기는 날카롭지 못하다면, 이른바 ‘관가 돼지 배 앓듯 한다’는 격이니 무엇에 쓸 것인가?(坐匠治械 徒費廩料 而器械不利 則所謂官豬腹痛 何用)<선조 30년 2월 12일(계유)>
- (3) 군대란 잘 먹여 기르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니, 모두에게 보솔(保率)을 후히 지급하여 임무를 맡겨야지 관가의 돼지 배 앓는 격으로 해서 는 결코 안 된다.(兵必養之 使得其樂 厚給保率而任事者 如官豬腹痛 決不可如是爲也)<선조 33년 1월 29일(갑술)>

위 인용문에 ‘관 들 배 앓기’에 해당하는 속담이 나온다. 그런데 원문에 속담임을 알리는 말이 없고 이에 따라 번역문에도 없다. 따로 이 속담을 검색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관가, 돼지’ 등을 檢索語로 주고 검색을 하지 않는 한 이 속담을 얻기는 어렵다. 특정한 속담을 검색한다면 이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속담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록된 속담은 검색할 방법이 없다.

원문에 속담임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가 있는데 번역문에서는 이 검색어를 그때그때 달리 번역하기도 하였다. 실록에서는 속담을 인용할 때 ‘諺’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번역문에서도 이 한자를 ‘속담’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속언(俗諺), 상말, 속언(俗言)’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외의 다른 말로 번역한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알아낼 방법이 없다. 다만, 원문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²⁾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속담을 수집하기 위하여 ‘속담’ 외에도 ‘속언, 속말, 상말, 속어, 俚諺, 俚語’도³⁾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였으며 검색 결과로 적지 않은 예를 확보하였다. 아래에 검색 결과를 보인다.

	속담	속언	속말	상말	속어	俚諺	俚語	계
1집(태조~성종)	39	17	0	6	8	1	16	87
2집(연산군~현종)	81	5	1	9	18	0	4	118
3집(숙종~철종)	81	7	6	4	1	0	3	102
계	201	29	7	19	27	1	23	307

그렇지만 검색하여 얻은 자료 모두를 그대로 속담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첫째는 민간에서 하는 말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俗談’이지 어휘론의 대상이 되는 속담이 아닌 예들이 있다.

2) 이 경우와는 반대로 번역자가 친절하게 ‘속담’으로 번역하여 검색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번역문에서 ‘속담’으로 번역된 부분을 원문을 확인하면 ‘諺’이 제일 많지만 그 외에도 ‘俗, 俗語, 語, 俗諺, 俚語, 俚諺, 鄙諺, 俗言, 諺語’ 등이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원문에 대응하는 한자가 없는데도 번역자가 판단하여 ‘속담’이라는 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본고의 논의와 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李基文(1980)의 머리말에 따르면 선조 때 유평인이 엮었다고 하는 어우야담(於于野談)에 ‘俗談’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가 ‘속담’이라는 번역어가 있는 기사를 원문에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원문에 ‘俗談’이 나온 것은 5회였는데 모두 「宣祖實錄」에서 나왔다.

3) ‘俚諺, 俚語’는 한자로 검색하였다. ‘이언, 이어’로 하면 불필요한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 (4) 봉산(鳳山) 사람 전 도승(渡丞) 전영(田榮)이 이르기를, ‘악질은 근년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속담에 전하기는 예전에 황 천사(黃天使)가 올 때에 황주(黃州)의 월봉사(月鳳寺) 재목을 철거하여 관사(館舍)를 수증(修葺)하고 또 성황당(城隍堂)의 고목을 벌채하여 흑교(黑橋)를 만든 뒤에 병의 기운이 비로소 싹뻗었다.’고 하나<성종 3년 2월 6일(계유)>
- (5) 속담에 사위를 웨랑(鰲郎)이라고 부르니, 이공(李公)의 발명(發明)은 진실을 발명하였다.<세조 13년 4월 5일(경자)>

(4)나 (5)와 같은 예를 속담으로 다룰 수는 없다.
둘째,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6) 일본국 진서 절도사(鎭西節度使) 원요준(源了俊)은 조선국 두 시중상공합하(侍中相公閣下)에게 글월을 올립니다. (…중략…) 속담에 ‘도둑은 소인이 나 지혜는 군자보다 낫다.’ 하였으니, 저들의 계략과 모책은 비록 성현이라 하더라도 혹 따르지 못함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줄한 계책이나마 그대로 맡겨 두면, 반드시 지저귀는 무리들이 없어져 두 나라의 정이 마땅히 좋아질 것이니 헤아리소서.<태조 4년 7월 10일(신축)>

(6)은 일본의 九州 節度使가 보낸 글월에 나오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글월 중에 나오는 속담은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 제시한 예들보다 더욱 판단이 어려운 것은 속담처럼 보이기도 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예들이다. 쉽게 처리하기로는 속담 사전, 예를 들어 李基文(1980)에 수록된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 사용되었던 속담이라면 李基文(1980)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는 우연히 李基文(1980)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는 李基文(1980)을 기준으로 하여 속담 여부를 판단하되 李基文(1980)에 없는 경우에는 정제된 형식으로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며 사회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을 속담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여 검색으로 찾은 속담들을 정리하니 81개이다. 아래에 속담을 제시한다. 속담은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원문이 한문인 점을 감안하여 李基文(1980)에 나오는 속담일 때는 그것을 표제로 삼아 원문을 제시하는 형

식을 취하였다. 李基文(1980)에 수록되지 않은 속담은 실록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다. 동일한 속담으로 보이면 후대 실록에서 나타나는 것을 함께 나열하였다.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간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동일한 속담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함께 제시하였다. 李基文(1980)에는 부록으로 ‘한자 속담 및 성어’를 제시하였는데 실록 원문의 한자와 일치하는 것이 있을 때는 ‘/’ 뒤에 제시하였다. 그 외에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註에 밝혔다. 편의를 위해 李基文(1980)에 있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 실록 원문은 國史編纂委員會 편(1984)을 참고하였다.

1. 쥐를 때리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투서나 기기라(投鼠-忌器-)※

- 1) 投鼠忌器<태종 3년 1월 9일(정해)>
- 2) 投忌鼠器<세종 27년 7월 9일(신사)>
- 3) 投鼠忌器<연산 1년 8월 9일(기미)>
- 4) 投鼠忌器<연산 9년 12월 22일(을묘)>
- 5) 投鼠忌器<인조 2년 7월 30일(임오)>
- 6) 欲投鼠而忌器<영조 5년 2월 28일(계묘)>

2. 고려 공사 삼일※

- 1) 高麗公事不過三日<태종 6년 5월 13일(임인)>
- 2) 我國之法三日而廢<세종 17년 9월 25일(계사)>
- 3) 高麗公事三日<세종 18년 윤6월 22일(정해)>
- 4) 朝鮮之法不還三日<연산 11년 1월 4일(경인)>
- 5) 朝鮮之法三日<중종 5년 12월 19일(신축)>
- 6) 朝鮮之法三日而止<중종 7년 11월 23일(계사)>
- 7) 朝鮮之法三日<중종 9년 4월 25일(무오)>
- 8) 朝鮮之法三日而已<중종 10년 윤4월 24일(신사)>
- 9) 朝鮮之法三日<중종 14년 12월 3일(계해)>
- 10) 朝鮮之法三日<중종 15년 윤8월 17일(임인)>
- 11) 我國之法不過三日<중종 20년 12월 26일(경술)>
- 12) 不出三日<중종 31년 10월 1일(계미)>
- 13) 高麗公事不過三日<선조 20년 3월 1일(경인)>
- 14) 我國行法三日而止<선조 36년 8월 10일(계사)>
- 15) 高麗公事三日<광해 2년 11월 18일(기미)>
- 16) 高麗政令不出三日<효종 3년 4월 1일(임인)>
- 17) 三日公事<숙종 30년 4월 18일(정해)>

- 18) 高麗公事三日<경종 3년 10월 19일(을축)>
 19) 高麗三日<영조 43년 10월 14일(갑술)>
3. 누이 주고 형께 호소한다
 1) 與妹訴兄<태종 17년 2월 15일(임신)>
4. 오방저미⁴⁾※
 1) 五方豬尾<세종 3년 2월 18일(신해)>
5. 뜰에서 자고 가기를 애걸하는 자가 안방을 피한다
 1) 乞宿門庭者謀諸閨房<세종 16년 8월 5일(기유)>
6. 송아지가 명예를 꺾으면 반드시 좋은 소가 된다
 1) 童牛折轅必成良牛<세종 24년 7월 29일(정해)>
7. 어린 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1) 負兒之言傾耳而聽<세종 24년 8월 3일(경인)>
8. 하루가 늦어지면 10일이 늦어지고, 10일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
 1) 一日之延 十日之延 十日之延 一歲之延<세종 26년 7월 16일(계해)>
9.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1) 猫畜之家鼠不肆行<세종 28년 5월 3일(경오)>
10. 무른 땅에 말뚝 박기※
 1) 潤地椽杙<세종 30년 7월 24일(무신)>
 2) 柔地椽杙<명종 7년 5월 25일(병오)>
 3) 軟地挿木<광해 10년 5월 22일(기유)>
 4) 軟地着杙<광해 10년 9월 14일(기해)>
11. 기러기는 가더라도 소리를 남기고 사람은 가더라도 이름을 남긴다
 1) 鴈過留聲人過留名<문종 원년 10월 21일(신묘)>
12. 계집의 곡한 마음 오뉴월에 서리친다※
 1) 一女之怨六月降霜<성종 5년 7월 28일(신사)>
13. 이불은 고을에 있고 원불은 서울에 있다
 1) 泥佛在邑而願佛在京<성종 6년 5월 10일(무오)>
14. 뱀이 곧은 통에 들어가도 굽은 성질은 그대로 있다
 1) 蛇入直筒曲性猶在<성종 7년 7월 15일(병진)>
15. 술에 취하여도 우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1) 飲酒者不入於井<성종 12년 2월 3일(정미)>
 2) 醉不入井<성종 13년 4월 11일(기유)>
16. 고양이로 고양이를 바꾸다

4) 李基文(1980)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기사가 인용되었다. 한자 성어라면 속담이 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속담을 漢譯한 것으로 보이기엔 제시하였다.

- 1) 以猫易猫<성종 18년 6월 14일(임오)>
- 2) 以猫易猫<중종 9년 9월 28일(정해)>
- 3) 以鼠易猫<선조 28년 2월 20일(계해)>
17. 관을 파는 장사치는 그 해에 역질이 있기를 바란다
 - 1) 鬻棺者 欲歲之疫<성종 19년 윤1월 7일(임신)>
18. 지킬 이 열이 도둑할 놈 하나를 못 당한다*
 - 1) 一人爲盜十人不能禁<연산 3년 1월 24일(병인)>
 - 2) 守者十不及盜者一<광해 7년 윤8월 7일(신해)>
 - 3) 守者十不如偷者一<광해 13년 6월 27일(정유)>
19. 개 목의 성지
 - 1) 狗項聖旨<연산 3년 8월 24일(계사)>
20. 경진년 무과
 - 1) 庚辰年武舉<연산 5년 12월 8일(임진)>⁵⁾
21. 범을 기르는 골에는 피해가 없다
 - 1) 虎育之洞不爲害者<연산 9년 3월 25일(임진)>
22. 달는 말에 채찍질/주마가편(走馬加鞭)*
 - 1) 走馬加鞭<연산 11년 5월 1일(을유)>
23.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 1) 百聞不如一見<선조 25년 9월 4일(신유)>
24.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⁶⁾*
 - 1) 鯨鬪蝦死<선조 25년 12월 15일(신축)>
 - 2) 鯨戰蝦亡<선조 32년 10월 8일(갑신)>
 - 3) 鯨戰蝦亡<광해 10년 9월 14일(기해)>
25. 관 둘 배 앓기/관저복통(官猪腹痛)*
 - 1) 官猪腹痛<선조 26년 6월 14일(정유)>
 - 2) 官猪腹痛<선조 32년 2월 2일(임자)>
 - 3) 官猪腹痛<선조 39년 2월 12일(신해)>
26. 언 발에 오줌 누기*
 - 1) 凍足添溺<선조 26년 11월 21일(신미)>

5) 이 속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사에서 유래를 밝히고 있다.

“우리 세조께서 인재를 얻는 데 힘쓰시어 경진년에 武科를 많이 뽑았는데, 속담에 번잡한 것을 기롱하려면 반드시 ‘경진년 무과’라 하고 서로 헐뜯으며 웃는다.(我世祖務得人才 庚辰年多取武舉 然諺譏冗 必稱庚辰年武舉)”

6) 李基文(1980)의 부록에 ‘鯨戰蝦死’로 나온다.

- 2) 凍足渡溺<숙종 29년 4월 3일(무인)>
 3) 凍足溺<정조 21년 7월 19일(병술)>
 27. 맺은 놈이 풀지/결자해지(結者解之)*
 1) 結者解之<선조 27년 6월 18일(을축)>
 2) 結者解之<정조 9년 3월 28일(정축)>
 28.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다
 1) 觸宿虎之尾<선조 29년 12월 25일(정해)>
 29. 길가에 집 짓기⁷⁾*
 1) 作室道傍三年不成<선조 30년 7월 29일(무오)>
 30. 울려는 아이 뺨 치기*
 1) 欲哭之兒杖之使哭<선조 32년 윤4월 13일(신묘)>
 31. 화살이 떨어진 곳에 과녁을 세운다
 1) 矢落處立貫革<선조 34년 2월 10일(기묘)>
 32. 종이 팔양경 읽듯*
 1) 僧之讀經<선조 34년 3월 19일(정사)>
 33. 엎더져 가는 놈 꼭뒤 찬다*
 1) 仆則壓鬢<선조 34년 9월 10일(갑진)>
 34. 사나운 범이 산에 있으면 명아주와 콩을 따지 않는다
 1) 猛虎在山藜藿爲之不採<선조 36년 8월 6일(기축)>
 35.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⁸⁾*
 1) 失馬修廄<선조 38년 9월 28일(기해)>
 36.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1) 不爨無烟<광해 4년 5월 15일(무신)>
 2) 薪苟不燃埃不生烟<현종 11년 3월 8일(을축)>
 3) 不爨之埃無烟<숙종 25년 10월 2일(병인)>
 37. 도둑이 매를 든다*
 1) 盜而荷杖<광해 7년 3월 25일(신미)>
 38. 먹기 싫은 밥을 보면 검부러기가 먼저 눈에 띈다
 1) 厭食之飯先覺埃墨<광해 10년 1월 7일(정묘)>
 39. 죽은 중에 곤장 익히기*
 1) 得死僧學杖<광해 10년 9월 14일(기해)>
 2) 習杖斃僧<숙종 42년 7월 1일(무오)>
 40.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鳥飛梨落)*

7) 李基文(1980)의 부록에 '작사도방이면 삼년불성(作舍道傍-三年不成)'으로 나온다.

8) 李基文(1980)의 부록에 '失馬治廄'로 나온다.

- 1) 鳥飛梨落<광해 13년 9월 28일(병인)>
 41. 제 입으로 길을 가르쳐 준다
 1) 以口指路<인조 7년 10월 3일(갑인)>
 42. 손에는 진상 들고 말에는 인정물을 싣고 간다
 1) 手持進上馬載人情<인조 14년 2월 10일(을유)>
 43. 녹비에 갈 알 자/숙룩비대전(熟鹿皮大典)*
 1) 熟鹿皮大典<인조 17년 4월 21일(무신)>
 2) 熟鹿皮大典<정조 10년 6월 12일(갑신)>
 44. 두 손에 떡/양수집병(兩手執餅)*
 1) 兩手執餅<효종 3년 1월 23일(병신)>
 45. 형체가 단정하면 그림자도 바르다
 1) 形端影直<효종 10년 윤3월 11일(신미)>
 46. 물라는 쥐나 물지 씨암탉은 왜 물어*
 1) 不捕鼠而攘伏雌<숙종 1년 8월 3일(무오)>
 47. 칼날은 장삼이 잡았는데 목숨은 이이가 없었다
 1) 張三操刀李二償命<숙종 5년 5월 15일(무신)>
 48. 활에 다친 새는 굵은 나무만 보아도 놀란다
 1) 傷弓之鳥見曲木而驚<숙종 9년 윤6월 24일(갑자)>
 2) 傷弦之羽猶驚曲木<정조 15년 1월 7일(임오)>
 49.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허덕인다*
 1) 病暑之牛望夜月而喘<숙종 9년 윤6월 24일(갑자)>
 50. 권문엔 손이 있어도 초야엔 입이 없다⁹⁾
 1) 權門有手草野無口<숙종 12년 1월 17일(임신)>
 51. 외 손뼉이 올라*
 1) 孤掌不鳴<숙종 15년 4월 21일(정해)>
 52.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1) 渴者之掘井<숙종 29년 3월 30일(을해)>
 53. 중학생이 화간하고 활인서 별제가 파직당하였다*
 1) 中學儒生和奸活人別提罷職<숙종 29년 8월 8일(신사)>
 54. 시작이 반이라*
 1) 事始爲半<숙종 30년 9월 16일(계축)>

9) 이 속담에 대한 풀이가 다음과 같이 기사 중에 나온다.

“손이 있다는 것은 약탈하여 불법으로 이득을 점유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이른 바 입이 없다는 것은 억울함을 품고도 드러내어 실토할 수가 없음을 일컫는 것입니다.(所謂有手者 掠取而橫奪占利之謂也 所謂無口者 含冤而不得吐白之謂也)”

55. 나무 건너 배 타기/월진승선(越津乘船)※
 1) 越津乘船<숙종 32년 12월 27일(신해)>
56. 술 심어 정자(亭子)라※
 1) 植松求蔭<숙종 36년 10월 16일(정축)>
57. 입에서 나간 것이 귀로 돌아온다
 1) 出乎口反乎耳<영조 1년 1월 3일(임인)>
58. 내 코가 석 자※
 1) 吾鼻三尺垂<영조 5년 9월 4일(을해)>
59. 초록은 한 빛¹⁰⁾※
 1) 草綠同色<영조 7년 4월 16일(무신)>
60. 물도 씻어서 마시고자 한다
 1) 水亦欲洗飲<영조 9년 2월 6일(무오)>
61. 낮으로 눈을 가린다※
 1) 以鎌掩目<영조 9년 4월 24일(을해)>
 2) 閉目以鎌<영조 9년 9월 25일(계묘)>
 3) 以鎌遮眼<영조 44년 2월 27일(을유)>
62. 귀 막고 방을 도둑질 한다※
 1) 掩耳偷鈴<영조 9년 9월 25일(계묘)>
63. 듣기 좋은 노래도 장 들으면 싫다※
 1) 歌雖好矣常聽則厭<영조 13년 3월 26일(갑인)>
64. 한 마리 고기가 온 강물 흐린다※
 1) 一魚混一淵<영조 13년 4월 24일(임오)>
65.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팽두이숙(烹頭耳熟)※
 1) 烹頭耳熟<영조 14년 8월 1일(신사)>
66. 초충이 나오면 항우도 힘을 쓸 수 없고, 치우친 논의가 생겨나면 제갈량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10) 속담의 기사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사 내용 중에 나오는 ‘서묘 대장’은 李基文(1977:131)에서 原形을 찾지 못한 속담으로 지적인 예 중에서 나오는 ‘鼠貓大將’인 것으로 보인다.

“초록 대장(草綠大將)·서묘 대장(鼠貓大將)이란 말이 영남에 성행했는데 그 뜻은 속담에서 ‘초록은 동색이다[草綠同色]’ 라고 하였기 때문이며, 서묘(鼠貓)는 크고 작은 쥐를 한 항아리에 넣어두면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기 때문에 큰 쥐를 서묘(鼠貓)라고 지목하는데, 초록·서묘라 칭한 것은 대개 출정(出征)한 사람의 당명(黨名)이 많아서 나온 것입니다.”(草綠大將鼠貓大將之說 盛行於嶺南 其意則俗云草綠同色也 鼠貓 以大小鼠共盛一甕 則大者吞小 故曰大鼠以鼠貓 草錄鼠貓之稱 盖指出征人之多其黨名者而發也)

- 1) 鳥銃出而項羽無以容其力偏論生而諸葛無以善其國<영조 14년 8월 9일 (기축)>
67. 성나 바위 차기※
 1) 發怒蹴石<영조 25년 4월 1일(무인)>
68. 남의 눈물을 닦으려 하다가 도리어 코를 상한다¹¹⁾
 1) 拭人涕而反傷鼻<영조 25년 6월 5일(신사)>
69. 혀 아래 도끼 들었다※
 1) 舌下斧<영조 25년 10월 7일(임오)>
70. 비록 성 위에서 떨어져도 손 안의 유자를 차마 놓지 못한다
 1) 雖墮城上手中柚子則不忍捨<영조 32년 2월 18일(병진)>
71. 게 잡아 물에 놓았다/착해방수(捉蟹放水)※
 1) 捉蟹放水<정조 10년 9월 10일(경진)>
72. 호사다마¹²⁾※
 1) 好事多魔<정조 12년 3월 10일(임신)>
73. 가마 밑이 노구슬 밑을 겁다 한다※
 1) 鼎底笑釜底<정조 13년 4월 11일(정유)>
74. 하늘에 닿을 듯한 파도는 옆의 빈 배에까지 미친다
 1) 接天之浪傍及虛舟<정조 15년 1월 7일(임오)>
75. 네 쇠뿔이 아니면 내 담이 무너지라※
 1) 非汝牛角何壞我墻<정조 16년 2월 30일(기사)>
76. 이 자리에 춤 추기 어렵다※
 1) 此筵難舞<정조 17년 5월 1일(임진)>
77. 게 술에 낮내기※
 1) 饋酒生色<정조 18년 2월 17일(을해)>
78. 새 발의 피※
 1) 鳥足血<정조 21년 7월 19일(병술)>
79. 나랏일은 전례를 따르고 집안 일은 선조를 따른다
 1) 國事依前例家事從先祖<정조 24년 1월 2일(을묘)>
80. 나막신 신고 압록강 얼음판 건너간다¹³⁾

11)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없지만 이 기사와 연관된 기사가 영조 25년 6월 9일(을유)에
 도 나온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함부로 나아가는 것을 '코를 찌
 다(攷鼻)'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드물게 볼 수 있는 관용구의 예이다.

12) 李基文(1980)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李基文(1980)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국립국
 어연구원 편(1999)에는 '좋은 일에 마가 든다'가 속담으로 있다.

13)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에 '나막신 신고 얼음판 건너간다'¹³⁾가 북한 속담으로 올라 있다.

- 1) 着木屐渡鴨江<정조 24년 5월 30일(신해)>
 81. 그 형체를 보지 못하거든 그 그림자를 살피라
 1) 不見其形而顧察其影<순조 1년 4월 25일(신미)>¹⁴⁾

총 81개의 속담 중에서 李基文(1980)에서 확인되는 것은 48개이다. 李基文(1980)의 머리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속담이 제법 불 만한 수집이 된 것은 속종 4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洪萬宗의 「旬五志」이다. 그렇다면 46번까지의 속담이 「旬五志」보다 앞선 시기에 사용된 속담이 되는 셈이다. 또한 47번 이후의 속담 중에는 「旬五志」에 없는 속담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예는 더욱 늘어난다.¹⁵⁾

실록에 수록된 속담은 사용 환경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속담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임금과 신하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신하가 인용하기도 하고 임금이 인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소문 등의 글월에서도 나타나며 史論에서도 나타난다.

- (9) 정인지(鄭麟趾)는 말하기를, “사람이 모두 간하였는데 홀로 유생만 가두면, 이것은 속담에 말하는 무른 땅에 말뚝 박는 것입니다.”<세종 30년 7월 24일(무신)>
 (10) 사신은 논한다. 높이고 낮추어 조율한 것이 지금 비롯된 것은 아니다. 권찬(權纘)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었는데, 정원이 혹 서리(書吏)를 불러 율(律)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어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논박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야 발론하니, 어찌 ‘무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속담이 쓰였는데 ‘나막신 신고 얼음 지치기’는 위태로운 모습을 비유하는 뜻으로 기술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 14)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膝甲’이 주목을 끈다. 李基文(1980)에 따르면 남의 시문(詩文)의 글귀를 몰래 훔쳐서 그것을 그릇 쓰는 사람을 ‘슬갑 도둑’이라고 한다. 그런데 속종 20년 윤5월 19일(을유)에 ‘슬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속담에 남의 무릎가리개를 훔친 자가 쓸 데를 몰라 이마에 붙였다 하여 잘못 쓴 문자를 일컬어 슬갑이라 한다.”(俗諺言 有偷人匣膝之物者 不知其所用 施之於額 故凡 誤用文字 謂之膝匣)
 15) 실록에 수록된 속담과 다른 문헌에 수록된 한역 속담의 비교는 따로 다를 생각이 다.

른 땅에 말뚝 박는다'는 속담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명종 7년 5월 25일(병오)>

- (11) 아, 오늘날 조정에 있는 대신과 대관(大官) 중에서 서궁을 비호한 자들이 어찌 유독 항복 한 사람뿐이기에 삼사에서는 이미 죽은 항복만 편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항복에게 혼이 있다면 어찌 비웃지 않겠는가. 이는 그야말로 '무른 땅에 나무 꽂는다'는 속담과 같은 격이라 할 것이다. 이목(耳目)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원들은 이 시대에 제 몸을 잊고 나라를 걱정하며 남의 원망을 도맡고 피하지 않는 그런 자를 과연 볼 수 있었는가. 나는 보지 못하였다. <광해 10년 5월 22일(기유)>

(9)에서 (11)은 동일한 속담인데 각각 신하의 말, 史論, 임금의 말에서 인용이 되었다.

그런데 속담에 따라 태도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어 흥미롭다.

- (12) 속담에 '관가 돼지 배 앓는 격'이란 말이 있는데, 말은 천박하지만 비유는 아주 적절하다. (俗談曰 官豬腹痛 言雖鄙野 取譬甚切) <선조 39년 2월 12일(신해)>
- (13) 바야흐로 그대는 이목(耳目)의 구실을 하는 관직에 있으면서 왜 이어(俚語)를 사용하는가? '낫으로 눈을 가린다'는 말은 잠곡(潛谷)의 자손이 할 말이 아니다. (方當耳目之官 而何用俚語 以鑣遮眼之說 非潛谷孫之言也) <영조 44년 2월 27일(을유)>

본론을 시작하면서 몇 예를 더 인용했지만 '25. 관 둘 배 앓기'라는 속담을 '관가, 돼지'를 檢索語로 하여 따로 검색하면 6회가 나오는데 모두 선조가 직접 사용한 속담이다. 그런데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선조 스스로 '천박하다'고 하였다. (13)은 헌납 김상묵(金尙默)이 상소하면서 '낫으로 눈을 가린다'는 말을 사용하자 영조가 이에 답하면서 조상까지 들먹이며 속담을 쓴 것을 비판하였다. 속담이 점잖은 대화 중이나 상소문 등에서 폭넓게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속담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속담 중에는 한 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나오는 것도 있다. 그 중에서 '2. 고려 공사 삼일'은 인용 횟수가 제일 많은 속담이다. 실록에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잦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속담의 인용도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李基文(1980)에서는 2-3) 세종

18년 윤6월 22일(정해)에 나오는 속담을 인용하였는데 이미 태종 때에 이 속담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李基文(1980)은 「於于野談」에서 ‘朝鮮公事 三日’을 인용하면서 후일 ‘高麗’ 대신 ‘朝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朝鮮’으로의 개작 시기가 연산군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세종 때의 기록에서 이미 ‘我國’이란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속담을 시대에 맞게 손질한 것은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후대로 가면 다시 ‘高麗’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실록의 원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관심을 끄는 문제이다. ‘2. 고려 공사 삼일’은 ‘高麗’와 ‘朝鮮’, ‘公事’와 ‘政令, 法’이 바뀌어 나타나면서 ‘三日’이라는 말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문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16. 고양이로 고양이를 바꾸다’의 경우 16-3)에서 ‘猫’가 ‘鼠’로 바뀐 점은 흥미롭다. 문맥을 보면 새로운 신하를 임명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뜻으로 쓰여 다른 두 예의 쓰임과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속담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猫’ 대신 ‘鼠’가 쓰였다. 최근에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와 ‘암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가 혼동되는 것처럼 속담을 구성하는 성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지킬 이 열이 도둑할 놈 하나를 못 당한다’와 ‘36.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는 원문들끼리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차이가 나타난 것에 불과한 듯하다. 이들은 字數에서 차이가 있지만 ‘10. 무른 땅에 말뚝 박기’, ‘24.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자수는 四字로 정제되어 있으나 한자 선택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宣祖實錄』에서만 나타나는 ‘25. 관 돌 배 앓기’는 원문이 ‘官猪腹痛’으로 모두 똑같다. ‘1. 쥐를 때리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도 거의 고정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1-2)에서 ‘鼠’와 ‘鼠’가 바뀌어 나타나는데 오류가 아닌가 한다. 실록에는 한 번만 나타나지만 속담을 수록한 다른 문헌의 것들과 비교하면 고정된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예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실록의 편찬 과정을 고려하면 최초 발설자가 있고 또 이를 옮겨 적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실록으로 편찬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각각 그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원문이 동일한 것은 한문으로 된 속담 자체가 인구에 회자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¹⁶⁾ ‘投鼠忌器’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 李基文(1980)에 따르면 ‘投鼠忌器’는 漢書에 나오는 말이므로 이 표현 자체를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⁷⁾ 이 속담은 오히려 한문으로 된 것이 먼저 있고 이것이 자주 사용되면서 속담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3. 결론

지금까지 실록에 나타난 속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속담, 속언, 속말, 상말, 속어, 俚諺, 俚語’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니 종류로는 81개의 속담을 실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太宗實錄」부터 「純祖實錄」에 이르기까지 역대 실록에서 두루 속담이 나타났다. 속담이 사용된 문맥은 다양하여 임금이 말할 때나 신하가 임금에게 말할 때 등 그야말로 점잖아야 할 자리에서도 속담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속담이 ‘고려 공사 삼일’처럼 19회나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단 1회만 사용된 경우도 있다. 원문 자체도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 그 양상을 검토하니 항상 동일한 표기로 나타나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원문마다 차이를 보이는 속담도 있었다.

81개의 속담 중에는 이미 알려진 속담 수록 문헌에 나왔던 것도 있고 실록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도 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속담 수록 문헌의 경우는 단지 속담과 뜻만을 보여주고 있다면 실록에 수록된 속담들은 사용 문맥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실록에 수록된 속담은 과거에 속담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부 친절하게 뜻을 추가로 밝힌 경우가 아니면 문맥에서 속담의 뜻을 짐작해야 하는데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문헌에 수록된 속담과의 비교 등을 통해 좀더

16) 沈在箕(1994 : 11)은 속담을 수록한 문헌들이 독자적으로 편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 번역(四字翻譯)이 서로 다른 문헌에서 동일한 표기 형태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漢文型이 연구에 회자되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17) 方鍾鉉(1963 : 562)에서는 賈誼 治安策이라고 밝혔다.

정밀하게 속담을 검토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고에서는 실록에 나타난 속담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 한역 속담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정밀하게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속담을 살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國史編纂委員會 편(1984), 『朝鮮王朝實錄(影印縮刷版)』, 探求堂.
- 김기종(1989), 『조선말 속담 연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김종택(1994),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새국어생활』 4-2.
- 方鍾鉉(1963), 『一簣國語學論集』, 民衆書館.
- _____ · 金思燁(1949), 『俗談大辭典』, 敎文社.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_____ (1982),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冠嶽語文研究』 7.
- _____ (1990), 「松南雜識의 方言類에 대하여」, 『姜信沆教授 華甲紀念 國語學 論文集』, 太學社.
- _____ (1994), 「俗談辭典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4-2.
- 李基文(1977), 「公私恒用錄의 東言解에 대하여」, 『성봉 김성배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 _____ (1980), 『俗談辭典』(改正版), 一潮閣.